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 삭제》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42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제220834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 삭제(안 제16조제2 항제3호 및 제6호 삭제)	2

I.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제220834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원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5. 2. 21.

다. 회 부 일 : 2025. 2.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 통일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국가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법무부의 경우 범죄예방, 인권향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하여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미정인 만큼 언급한 두 기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3호 및 제6호 삭제).

3. 검토의견

가.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 삭제

(안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 에서 제외한다. 1. 2. (생 략) 3. <u>법무부</u> 4·5. (생 략) 6. <u>여성가족부</u> ③ ~ ⑥ (생 략)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5.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함)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행복도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대통령은 제외함)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¹⁾임.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행복도시법」이 2005년 5월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11월 국무조정실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로 이전한 이후 2021년까지 총 23개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로 이전하였음.

수도권에는 대통령비서실 등 19개 기관이 있는데, 이 중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기관은 「행복도시법」 제16조제2항2)에 따라 행복도시로의 이전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 중앙행정기관 소재지 현황 】

구분		기관명
행복도시[세종] (23개 기관)	2012년 이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3년 이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이전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2016년 이전	인사혁신처, 소방청
	2019년 이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이전	중소벤처기업부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삭제
6. 여성가족부

구분		기관명
수도권 (19개 기관)	서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가정보원, 감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 검찰청, 경찰청
	경기	법무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송통신위원회
	인천	해양경찰청
지방 (13개 기관)	대전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전북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충북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 자료: 국토교통부

이는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및 내치기능을 담당하는 6개 기관(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17년 「행복도시법」의 개정으로 대통령 보좌 및 통치기능과의 관련성이 낮아진 행정안전부를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법무부, 여성가족부의 경우 대통령 보좌 및 통치기능과 관련성이 낮

으므로 행복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행복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입법임.

「정부조직법³⁾」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행정 비효율 제거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 여성가족부의 행복도시 이전에 동의

3)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③ (생략)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는 의견임.

법무부는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여·야 합의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정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여성가족부는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임.

【 관계기관 의견 】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	○ 의견 미제출
법무부	○ 여·야 합의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바, 정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
여성가족부	○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
과천시	○ 지역상권 위축과 행정도시로서의 상징성 약화 우려로 반대

※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로, 「행복도시법」을 폐지하고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는 취지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제2210318호)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2025. 5. 2.)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590